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취업통지서 송부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제 호		취업통지서		
고용 의무자	업체등명			
	대표자명		전화번호	
	소재지(주소)			
	고용예정직종		고용통지일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5·18민주 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)
※ 유의사항: 이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라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또는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른 취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

팩스번호 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